

## 2022년 지역현안 해결형 시범사업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지역 현안 문제 해결 및 지역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의 역량 강화 및 실증 기반 마련을 위해 「2022년 지역현안 해결형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및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5월 11일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지역 현안 문제 해결 및 지역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의 역량 강화 및 실증 기반 마련
-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 공모 과제 등 제안을 위해 서비스 실증 아이템 발굴

#### ○ (공모주제) 탄소배출권,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자유공모

※ 탄소배출권,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전분야 지원 가능

#### ○ (과제수) 1개 과제 선정

#### ○ (사업기간) 협약일 ~ 22. 11. 30.(수)

#### ○ (사업비) 110,000천원

- 시범사업으로 기업부담금 별도 없음
- 사업비는 사업 착수 시 70%를 선지급하고,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30% 지급
- \* 평가결과점수가 70점 미만인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비 회수 예정
- 사업비의 경우 협약체결 이후, 별도 계좌개설 및 관리 후 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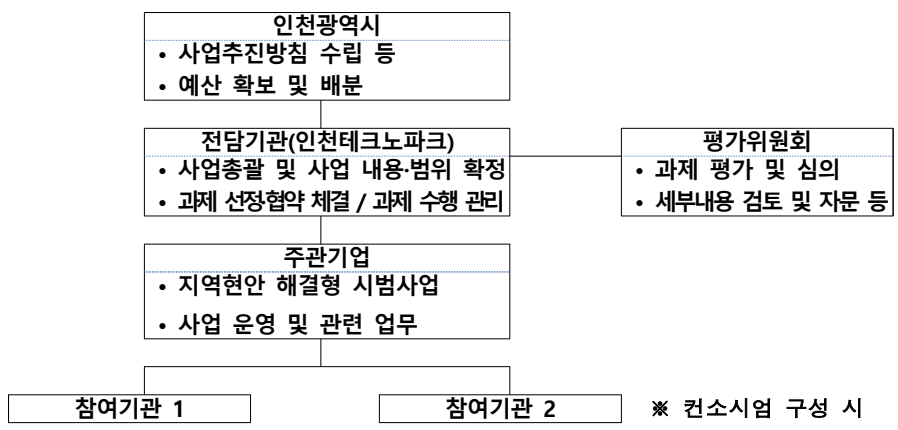
#### ○ (참여방법)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

※ 단,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업은 인천 지역 내 기업 필수이거나, 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 전담기관(인천TP)과의 협의 후 인천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향후 이전하지 않을 경우 환수조치 예정(사업제안시 이전확약서 제출 필수)

### 2 시범사업 세부내용

구분	내용
지원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배출권 및 블록체인(기술) 키워드를 반영한 자유제안</li> </ul>
주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시범사업의 목적은 탄소배출권 활용 및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이므로, 지역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어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현안 : 사업 제안시 지역현안의 근거를 별도 제시</li> </ul> </li> <li>• 사업기간 내 실증공간에 시범사업 적용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증공간의 경우 제안하는 기업, 기관에서 협의하여 공간 마련</li> <li>※ 단, 인천테크노파크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사전 협의필요</li> <li>※ 향후, 전담기관(ITP)의 요청시 실증공간을 제공하여야 함</li> </ul> </li> <li>• 본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서비스 실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개발된 기술 활용 가능 및 시범사업을 위한 기술개발 가능</li> </ul> </li> </ul>
사업예산	110,000천원
협약기간	선정일 ~ 2022. 11. 30.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기업은 참여기관보다 지원금 비율이 낮을 수 있음</li> </ul> </li> <li>• 주관기관 : 인천소재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 인천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이전하지 않을 경우 환수조치 예정(이전확약서 제출 필수)</li> </ul> </li> </ul> </li> <li>•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인천 외 지역 가능</li> </ul> </li> </ul>
사업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사업비의 100% 시비 지원 / 민간부담금 별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사업비 중 인건비의 경우 타과제와 참여율이 중복되면 안됨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100%를 초과할 수 없음)</li> <li>※ 출연금 지원 기준 및 사업비사용 지침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우선 적용예정</li> </ul> </li> </ul>
선정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공고 후 서면/발표 평가를 통해 평가점수 상위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된 제안서의 제안 내용을 평가하여 적격 업체 중 최고득점 업체와 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평가결과 평점이 70점 미만인 경우 지원 제외)</li> <li>- 1차 적합성 평가(서면평가) : 최종 과제수의 5배수 내외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지원 수가 최종 과제 수의 5배수에 미달된 경우, 제출된 제안과제에 대해서 별도 서면평가를 진행하지 않으며, 서면/발표 평가를 함께 진행 예정</li> </ul> </li> <li>- 2차 선정평가(발표평가) : 평가점수 상위 기업(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li> </ul> </li> </ul>
사업종료 이후 제출 및 증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수행 결과보고서</li> <li>• 사업비 회계정산자료(정산기준은 '준용규정'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부 파일(기업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전문) 참고</li> <li>※ 사업비 편성항목 내 회계정산비용 반영 후 회계정산자료 제출 필수</li> </ul> </li> </ul>

### 3 추진체계



### 4 신청자격

- (주관기관)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이거나 협약체결 후 3개월 이전에 인천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
  - ※ 단,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업은 인천 지역 내 기업 필수이거나, 협약체결일 후 3개월 이전에 인천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향후 이전하지 않을 경우 **환수조치** 예정(확약서 필수)
- (참여기관) 지역 내·외 유관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등
  - ※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천 내 기관을 우선하여 구성할 것을 권고함

### 5 지원제외 대상

- (중복지원) 해당년도에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기업은 동일 아이টে็ม으로 타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 (의무사항 불이행)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에 맞지 않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등록기업(법원 회생인가 기업 제외), 파산, 회생절차개시 신청기업

- 최신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완전 자본잠식이 확인된 경우 ※ 단,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제외
-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책임자 소속) 공고일 현재 주관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가 사업 신청 기관소속이 아닌 경우 ※ 4대 보험 미가입시 소속기관 임직원으로 불인정
- (허위 및 거짓) 본 과제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거짓인 경우

### 6 신청 및 접수방법

- (공고기간) 2022. 5. 11.(수) ~ 2022. 6. 7.(화)
- (접수기간) 2022. 5. 11.(수) ~ 2022. 6. 7.(화) 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http://bizok.incheon.go.kr>)
  - ※ 홈페이지 회원가입/로그인 완료 후 상단 메뉴 과제신청으로 접수
  - ※ 제출서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반드시 접수 마감 전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 ※ 전산등록마감일에는 데이터접속 증가로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권장
-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필수	비고
1	사업계획서 1부	○	주관
2	발표자료(PPT 작성 후 PDF 변환하여 제출) 1부	○	주관
3	<서식1> 참여의사확인서 1부	○	주관, 참여
4	<서식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주관, 참여
5	<서식3> 참여인력 참여확인서	○	주관, 참여
6	<서식4>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 해당	○	주관, 참여
7	<서식5>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	주관
8	<서식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주관, 참여
9	<서식7> 주관기업 인천 이전확약서(해당시) ※ 협약체결 후 3개월 이전에 인천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해당시	주관
10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각1부 ※ 비영리기관은 해당 없음 - 법인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	주관, 참여
1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주관, 참여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 비영리기관은 해당 없음	○	주관, 참여
13	4대보험가입자명부 1부	○	주관, 참여
14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증서 사본 1부**(해당시) ※ 설립예정 기업은 협약 후 제출	해당시	주관, 참여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변동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출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대상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외 기업은 결산보고서 또는 세무사(회계사) 확인 자료 제출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인증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

## 7 추진계획 및 평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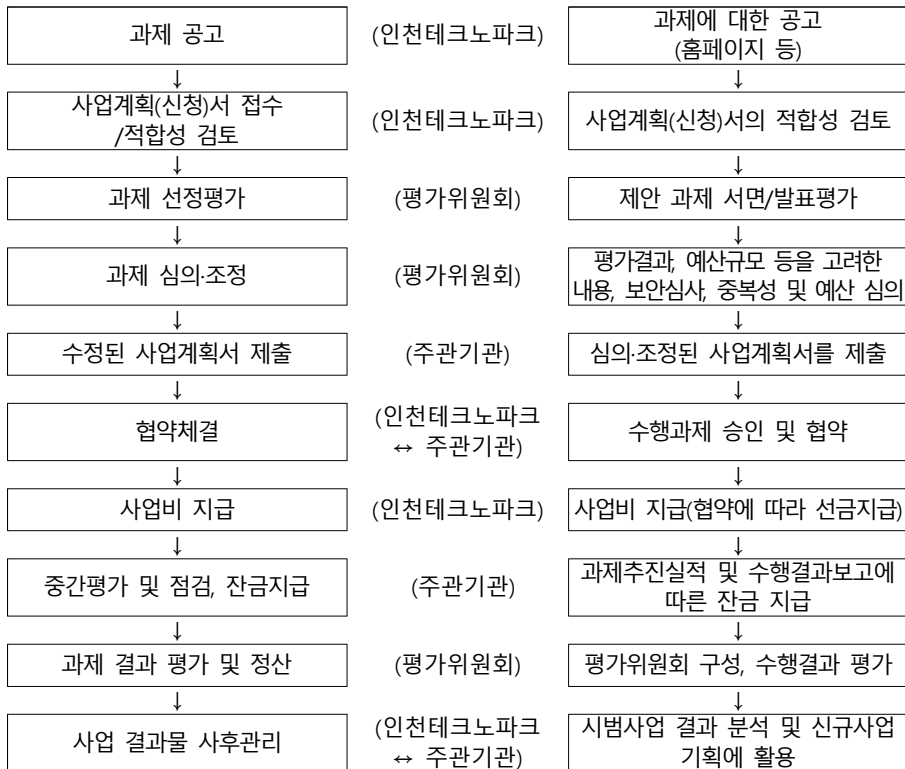
- (추진계획) 지역현안 해결형 시범사업 주요일정 및 진행절차
  - 서면평가 :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 검토
  - 발표평가 : 과제 책임자의 발표평가 (질의응답 포함 25분) 실시
    - ※ 평가위원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평균)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가능',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 및 수행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요일정>

공고 및 접수	사업선정평가 (서면)	사업선정평가 (발표)	수정계획서 접수 및 협약체결	사업 수행 및 중간점검	사업종료 및 최종평가
5.11.~6.7.	6.9(서면)	6.14(발표)	6월 중	9월 중	~11.30.

※ 상기 일정 및 구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ex. 코로나 19 변이바이러스 등)

### <진행절차>



- (평가기준) 평가위원회 개최 시 아래 기준 적용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																
사업 목표 및 타당성 (20점)	○ 과제 제안 배경 및 목적의 타당성	10점																
	○ 과제 추진의 필요성, 시급성, 지원 타당성	10점																
실현가능성 (50점)	○ 과제제안기업(단독 또는 컨소시엄) 수행 역량 및 보유기술	10점																
	○ 실 서비스 구현 시 참여 기업 구성(노드)의 적정성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10점																
	○ 시범사업을 통해 확보 가능한 실증 공간 수	5점																
	<table border="1"> <tr> <td></td> <td colspan="3">실증공간 수</td> </tr> <tr> <td>기준</td> <td>10개 이상</td> <td>5개 이상</td> <td>1개 이하</td> </tr> <tr> <td>점수</td> <td>5점</td> <td>3점</td> <td>1점</td> </tr> </table>			실증공간 수			기준	10개 이상	5개 이상	1개 이하	점수	5점	3점	1점				
		실증공간 수																
	기준	10개 이상	5개 이상	1개 이하														
점수	5점	3점	1점															
○ 시범사업에 참여 가능한 참여자 수	5점																	
<table border="1"> <tr> <td></td> <td colspan="5">참여자 수(공간별)</td> </tr> <tr> <td>기준</td> <td>50명 이상</td> <td>40명 이상</td> <td>30명 이상</td> <td>20명 이상</td> <td>10명 이하</td> </tr> <tr> <td>점수</td> <td>5점</td> <td>4점</td> <td>3점</td> <td>2점</td> <td>1점</td> </tr> </table>			참여자 수(공간별)					기준	50명 이상	40명 이상	30명 이상	20명 이상	10명 이하	점수	5점	4점	3점	2점
	참여자 수(공간별)																	
기준	50명 이상	40명 이상	30명 이상	20명 이상	10명 이하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 과제 수행에 대한 의지 및 블록체인 서비스 보안방안의 적정성	10점																	
○ 인천시민 대상 시범사업 적용 실현 가능성	10점																	
블록체인 활성화 기여도(20점)	○ 지역현안 해결형 시범사업 성과목표의 타당성	10점																
	○ 블록체인 서비스 구성의 적합성 (블록체인 참여기업 데이터 등)	10점																
확장성 (10점)	○ 시범사업에서 파생되는 사업연계 및 확장성	10점																
<b>총계</b>		<b>100점</b>																

## 8 유의사항

- 협약 안내
  - 협약 대상자로 최종 결정될 경우 제안기관은 전담기관(ITP)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선금은 지원금의 70%를 지급하며, 선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진도관리 및 보고
  - 일상적인 사업 수행 보고는 수시 및 주간·월간보고로 진행
  - 시범사업 진행현황 점검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방문 실사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1회 이상)
  - 착수보고, 중간·최종발표 추진예정
    - ※ 사업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계획 변경 시 전담기관(ITP)에 변경을 요청하고 협의한 후 변경

## 9 가점제도 적용

- 가점부여 조건(최대 1점)
  - 인천시 우수기업 인증(유망중소, 비전,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1점

## 10 사업 관련 문의처

구분	담당자	연락처
사업 관련 내용 (사업비, 협약변경 등)	AI혁신센터 손창우 책임연구원	032-260-0932 scw89@itp.or.kr

본 사업관련 제반업무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우선적용하며, 본 사업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하여 관리할 예정임

